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8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20. 11. 19.
판 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9. 1.자 양도소득세 90,441,6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17. 11. 9.자 추가양도소득세 280,000원 및 120,000원 부과처분, 2020. 2. 6.자 양도소득세 7,792,46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양도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2. 피고 [redacted]군수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1. 10.자 지방양도소득세 12,157,010원 부과처분, 2016. 5. 16.자 지방양도소득세 13,271,91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지방양도세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양도세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5.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redacted]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3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 후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인 2007. 7. 9. 'B가 원고로부터 3억 4,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1. 11. 8. B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내렸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양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런 주장 · 입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양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할 수 있는 별개의 불복절차로서 이를 들어 법률상 요구되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redacted]군수에 대한 청구 부분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 [redacted]군수가 2016. 6. 15.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에 '피고 [redacted]군수가 원고에 대한 지방양도소득세 12,157,020원과 관련하여 같은 지원 E 강제집행 사건에서 12,157,020원을 배당받았으나, 그 후 같은 지원 2015금225호 공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체납세액 13,271,910원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배당금 12,157,020원을 보관금으로 공탁하니 위 강제집행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추가배당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가배당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2018. 2. 7. 위 추가배당요청에 따른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아무리 늦어도 2018. 2. 7.경에는 '피고 [redacted]군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방양도세부과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무려 2년 7개월이 지난 2020. 9. 7.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군수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1-2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끝.